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
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김부겸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

구 분	고도 장애	중등도 장애	경도 장애
월 지급액(천원)	1,061	782	513

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

구 분	고도 장애	중등도 장애	경도 장애
월 지급액(천원)	1,889	1,468	1,179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